

2021 - 331

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(4지구)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8차 건축위원회 심의(조건부 의결, 2020.11.24.)를 거쳐 『건축법』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8일
서울특별시

1. 지정 목적

- 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,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,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,
- 나. 잠실아파트지구의 지역소통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열린 도시주거 및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통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
지구명	위 치	범 위	면 적(㎡)
잠실아파트지구(4지구)	송파구 신천동 20-4번지 일대	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	112,558.5
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
구역명	용 도	대지면적(㎡)	높이(m) (층수)
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	계	112,558.5	-
	주택용지	101,151.3	120m이하(35층 이하)
	주구중심	2,878.5	30m 이하(5층 이하)
	정비기반시설	8,528.7	-

※ 세대수, 면적, 용도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

나. 특례적용사항

구역명	특례적용사항	적용취지
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구역	『건축법』 제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 한) : 적용배제 ※ 단,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, 대상지 내부만 적 용함	- 특례적용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고 층과 중·저층이 혼재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 성하고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 구현으로 조 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 가능 - 단지 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 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하며, 가로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가능

4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
5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: 관련규정에 따름

6. 기타 사항

-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 02-2133-7137), 송파구
주거사업과(☎ 02-2147-2888)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